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09회 정례회
2023.06.13.(화)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3년 5월 31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3. 제안이유

2022. 7. 5. 시행된「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등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및 제3조)

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4조)

라.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안 제5조)

마. 지속가능발전지표·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안 제6조 및 제7조)

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구성 등(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사.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및 조사·연구의 의뢰(안 제17조 및 제18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지속가능발전’은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 이 조례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점검,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보급 및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법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법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4조는 법 제11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법 제14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경우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법 제15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는 법 제1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법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7조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8조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3. 4. 14.～'23. 5. 4.)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제정안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조문이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6. 검토의견

가.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다만, 이 조례의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에 명시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비 1억5천만원,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성 평가 용역비 1억원과 매년 2천7백30만원씩 총 1억9백만원이 소요되는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